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41
----------	-------

발의연월일 : 2025. 12. 3.

발 의 자 : 김성원 · 김선교 · 정동만
고동진 · 구자근 · 김용태
박충권 · 김정재 · 이인선
박성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게임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가 생성한 게임물과 사람이 창작한 게임물이 혼재하여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AI 활용 여부를 표기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이 게임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저작권 · 지식재산권 분쟁, 창작자 권리 침해, 이용자 기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일부 제작자들이 생성형 AI 표기를 고의로 삭제 · 변조하거나 위조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유통하는 등 불법 · 불투명 유통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된 게임물에 대해 AI 생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그 표시를 위조 · 변조 · 훼손 또는 제거

하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게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게임 유통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공정하고 안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작된 게임물의 표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조·변조·훼손 또는 제거하여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제3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하는 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제32조제1항제2호”를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3조제4항에 따른 표시의무를 위반한 때

제45조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5의2. 제32조제1항제6호의2를 위반하여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 ----- ----- ----- ----- ----- -----.
1. ~ 6. (생략) <u><신설></u>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작된 게임물의 표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조·변조·훼손 또는 제거하여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 11. (생략) ② (생략)	7.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표시의무)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3조(표시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하는 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게임물을 제</u>

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신 설> ② ~ ④ (생 략)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신 설> 5의2. (생 략) 6. (생 략) 7.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33조 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8. ~ 11. (생 략)	<u>호의2</u>----- ----- 4. 제33조제4항에 따른 표시의무를 위반한 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벌칙) -----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32조제1항제6호의2를 위반하여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자 5의3.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6. (현행과 같음) 7. ----- -----제3항 또는 제4항----- ----- ----- 8. ~ 11. (현행과 같음)
--	--